



교육혁신지원센터규정

[제목개정 2019. 3. 1, 2019.11. 1]

제 정 일	2014.11. 1
개 정 일	2023.11. 1
개정차수	9차
담당부서	교육혁신지원센터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과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동서울대학교 교육혁신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 2019.11. 1, 2020. 8.10)

제 2조 (사업)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역량기반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개정 2020. 8.10)
2.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편성 지침 수립 (개정 2020. 8.10)
3.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개정 2020. 8.10)
4. 역량(직무역량 및 핵심역량) 성취도 관리 (신설 2020. 8.10, 개정 2021. 1. 1)
5. DU 핵심인재 인증제 운영 (신설 2020. 8.10)
6. 핵심역량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20. 8.10)
7. 교육성과지표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23. 1. 1)
8. 기타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지원,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8.10)

제 3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8.10)

- ② 학부(과) 및 전공별 각 1명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담당 교수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 3. 1, 개정 2020. 8.10, 2023. 1. 1)
-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제 4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3. 1, 2019.11. 1)

-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6. 3. 1)

- ③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1. 1)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개정 2016. 9. 1, 2023. 1. 1)

1. 역량기반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8.10)
2.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편성지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9. 1, 2020. 8.10)
3. (삭제 2016. 9. 1)
4. 교육과정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8.10)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제 4조의 2 (삭제 2023. 1. 1)

제 4조의 3 (역량기반 교육과정 담당교수) ① 학부(과) 및 전공별 각 1명을 역량기반 교육과정 담당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8.10)

② 역량기반 교육과정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한다. (개정 2020. 8.10)

1.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각 학과별 추진 (개정 2020. 8.10)

2. 역량기반 교육과정 자체평가 및 환류에 대한 각 학과별 추진 (개정 2020. 8.10)

3. 역량관련 행정사항 학과 안내 (개정 2020. 8.10)

[본조신설 2016. 3. 1, 제목개정 2020. 8.10]

제 5조 (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총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